

보다 안전한 미래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테일오피스텔 1828호) /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www.assi.or.kr E-Mail : assi1307@naver.com 담당 : 박용복국장 (H·P) 010-8688-5619

문서번호 시험 2019 - 111호

시행일자 2019. 4. 22.

수 신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

참 조 분임재무관

선			지	
결			시	
접	일자		결	
	시간			
수	번호		재	
처	리	과	공	
담	당	자		
			람	

제 목 「파평초 내진성능평가 용역」 입찰공고 수정·보완 요청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청이 「파평초 내진성능평가 용역」을 발주하면서 “전적제출 참가자격” 첫 번째 항목에 다음 공고 내용과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참여업체의 과도한 제한으로 다수 진단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.

-공고 내용-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(건축)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(종합)으로 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(건축)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,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(주된 영업소)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.

3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시설물 안전법’)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‘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‘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’로서, 학력+기술자격+경력+교육으로 산정한 기술자 역량지수(ICEC)에 의하여 이미 건축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4. 「우리 협회는 교육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교육부에 공문(시협 2019-13호, 2019.01.30. 첨부함)을 보낸바 있으며,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를 입찰제한으로 하지 않고 발주하고 있으므로, 귀 청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부실용역과 불법하도급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제한 조항을 수정·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(1) 교육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협회공문(사본) 1부.
(2) 서울특별시 산하 교육지원청 입찰공고(사본) 1부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